

충청북도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(안)

□ 제안이유

- 잘못된 자구의 수정
- 적용시 한의 명시

□ 주요골자

- 제3조 중 "과세 면제"를 "불균일과세"로 개정
- 제4조 중 "면제신청"을 "경감신청"으로 개정
- 적용시 한 : 1994년 12월 31일까지

□ 근거법령

-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
- 도시가사사업법 제3조

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.

- 위원장대리 김기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전문위원 민귀식 충청북도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도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.

(참 조)